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 11. 16.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07. 11. 19.

○ 상 정 일 : 2007. 11. 2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가. 제안이유

○ 2004. 9.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속적인 증가 및 수시 개·폐업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부적정 처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발생

○ 2005. 12.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이 개정되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음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규정

☞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설치)

- 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

○ 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근하)

○ 본 조례는 2005. 12.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주요내용 으로서**

▶ 제2조(정의)에서 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조례 안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식품접객업 중 신고 영업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되어있어 현행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개정 165제곱미터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완화되는 개정내용이 됨에 따라 배출자인 시민의 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다 할 것임.

▶ 제3조와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개정내용은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0조 제4항은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자가 원할시는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 판단됨.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의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을 전용봉투와 전용용기 그리고 재활용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 구체화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2년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하지 않은 이유와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았는지?(김병창 위원)

나. 답변요지 〈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

○ 상위법 개정 직전 시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현행처럼 운영 적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었음. 앞으로는 상위법에 맞게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음.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